『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 』

- 과 업 설 명 서 -

2026. 11.

국토안전관리원
KALIS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Green Remodeling Center

순 서

Ⅰ.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1

Ⅱ. 과업 개요 ····· 1

Ⅲ. 과업 세부내용 ····· 4

1. 계획지원 ····· 4

2. 시행지원 ····· 9

3. 준공지원 ····· 12

4. 사업지원 ····· 14

Ⅳ.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 18

Ⅴ. 보안대책 ····· 21

Ⅵ. 기타사항 ····· 23

붙임1.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자격 및 대상 ····· 24

붙임2.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항목 ····· 31

붙임3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기준[참고] ····· 32

별지 제1호 건축물별 기초조사 양식 ····· 41

별지 제2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예시) ····· 46

Ⅰ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기후 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희망건축물의 자격검증·현황조사·보고서 작성부터 준공 이후 관리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건축물의 **종합적 사업관리 지원**이 필요

□ 추진목적

○ 광역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이 제출한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건축물에 대한 자격검증·현황조사 및 컨설팅을 통한,

- 최적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안) 작성 등 사업 전**[全]**과정의 종합사업지원**을 담당할 **권역별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Ⅱ 과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

□ 총사업비 : 8,245백만원 (VAT포함, 보조금 보조율 : 국비 100%)

○ 총 희망건축물수(예상) : 820동

구분 \ 권역		서울권 제주도	경기권 인천	강원권(1) 강원	강원권(2) 강원	충북권 대전	충남권 세종	전북권 전북	전남권 광주	경북권 대구	경상권 울산·부산	합 계
동 수(동)		73	61	128	77	78	71	70	112	72	78	820
총 사업비 (단위:억)	합 계	8.2	6.5	11.8	6.7	8.0	7.9	7.0	11.0	7.2	8.1	82.4
	사업A	3.4	2.5	3.4	1.7	2.9	3.3	2.4	3.7	2.5	3.0	28.8
	사업B	4.8	4.0	8.4	5.0	5.1	4.6	4.6	7.3	4.7	5.1	53.6

* 강원권(1)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

** 강원권(2) : 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양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참 고 사 항

※ 희망건축물은 '23, '24, '25, '26년 희망건축물의 평균 접수 동수에 근거. '27년 실제 희망건축물의 접수 동수와 차이 시, 권역별 물량 조정 등 사업 변경 추진 가능

※ 사업대상기관의 사정상 희망건축물 신청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당초 물량 기준으로 희망건축물 변경 가능(변경된 희망건축물은 접수에 따라 당초 권역과 다른 지역에서 담당 가능)

※ 사업A·사업B에 대해서는 과업설명서 4-21페이지 '과업 세부내용' 참고

□ 사업기간

○ (사업A) '26. 12월 ~ '28. 12월 ※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예산

○ (사업B) '27. 01월 ~ '29. 12월 ※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예산

□ 사업대상 : 10개 권역

□ 주요 사업내용

○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사용 및 공간환경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희망]건축물 **사업계획(안) 수립**과 [선정]건축물 **사업 전반의 기술·행정지원**

*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 과업설명서 [붙임] 자료 참고

- 과업범위는 ① **계획지원,** ② **시행지원,** ③ **준공지원,** ④ **사업지원**으로 구분

① (계획지원) 기본 자료수집·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을 비롯한 **대상선정 지원**

○ (**주요과업**) 건축물 **운영특성**(재실자수, 설비운영)과 단열·창호·설비 **현황조사**를 통한 **GR 사업계획 수립**(기술적용 계획, 효과분석*, 사업비 산출)

* GR-시뮬레이터 활용 예정(국토안전원 개발('25년))

② (시행지원) **설계·시공단계**별 적정성 검토와 **사업변경** 지원을 포함한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기술·행정 지원**

○ (**주요과업**) **설계·시공**(사업계획 반영, 공사방법과 범위, 자재와 기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컨설팅, 사업변경 기술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 지원

3 (준공지원) 준공 전 **품질점검**과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성과분석**

○ (**주요과업**) 준공 前 **하자조사**를 비롯한 **품질검수**와 **인·허가 지원**, 준공 後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분석**을 포함한 **사업종료 절차 지원**

4 (사업지원) 차년도('28년) **시그니처 사업*** **발굴**과 국토안전원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 (**시그니처 사업**) 친환경, 선도적 설계 및 공법적용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하며 지역 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주요과업**) 권역별 **시그니처 사업 발굴**, 국토안전원 주관 **교육·사업설명회·심의위원회·워크샵** 지원, **기술이전** 및 **단위사업*** 지원

* Energy-Studio(GR전용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 GR-특성화대학, GR-챌린지, GR-취업박람회, GR-기자단 등

□ 사업 구분 및 예산지원

○ (**총사업비**) 8,245백만원

① 사업A

사업 기간	구 분	추진단계	사업내용	총사업비
'26~'28년	본공모 전前	1 기획지원-1	· 희망건축물 자격검토 · 건축물 현황조사	2,880백만원 ('26년 예산)

② 사업B

사업 기간	구 분	단 계	사업내용	총사업비
'27~'29년	본공모 전前	1 기획지원-2	·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 마련 · 사업대상 선정지원	5,365백만원 ('27년 예산)
	본공모 후後	2 시행지원	· 설계단계 지원 · 시공단계 지원 · 사업계획변경 지원 · 시그니처사업 지원	
		3 준공지원	· 준공 전前 하자조사 등 품질 검수 · 공사 후後 에너지 분석을 통한 사업 성과 분석 등 · 공사 후後 안전점검	
		4 사업지원	· '28년 시그니처사업 대상지 발굴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 단위사업 지원 · 기술이전 · 행사지원 · 정책·사업·제도 고도화 지원	

※ 사업계획서의 예산계획서는 '보조사업자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집행 가이드라인-민간보조사업자 편'에 근거하여 사업A, 사업B를 구분하여 작성할 것

Ⅲ 과업 세부내용

1 [계획지원]

❶ [희망건축물 자격검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희망건축물 대상기준을 확인**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건축물 신청 안내**'에 따라 각종 **공적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를 검토하여 **지원자격*** **검증**

* [붙임]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자격 및 대상 참고

❷ [건축물 현황조사]

① [사전 기초조사]

○ 건축물 **기본정보**, 지자체 및 시설관리 **담당자**, **설계도서 유무** 확인 등

○ 최근 3년간 년간·월간 **에너지원별**(전기, 가스, 유류, 지역난방,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량 수집** 등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현황 확인**

○ **석면조사** 실시 여부 및 법정 **구조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확인(내진성능평가 및 구조 안전점검 등)

○ 건축물의 창호 교체, 설비 교체 등 **보수 이력** 및 **확정된 보수 계획 유무 확인**

② [현장조사]

○ **지자체** 및 **시설관리자**, **사용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

○ 실별 사용자 수, 냉·난방 설정 온도, 냉·난방 스케쥴 등 **운영현황 조사**

○ **건축물**의 벽·지붕·바닥 단열, 창호,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등 **설치 현황 및 노후도, 내구연한 조사**

○ 에너지 흐름 및 열원 파악, 건물별 설비 공유 현황 등 **상세조사**

ㅇ **계량기** 동별·용도별 분리 확인 및 기존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여부 확인**

ㅇ 임의 증축 등 **위반 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③ **[공사 전前 안전점검]**

ㅇ 현장조사 시 **육안조사**로 **구조적 보완** 필요여부 검토

ㅇ 그린리모델링 **성능개선** 범위 內 **구조적 보완** 필요여부 검토

ㅇ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시행 필요여부 검토

ㅇ 태양광 등 **신재생 설치 가능 여부 검토**

ㅇ 탐문·현황조사 및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조사** 필요여부 검토

④ **[도면 현행화]**

ㅇ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에너지 성능분석**에 필요한 **도면 현행화**(dwg 파일 형식)

❸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 마련]

① **[에너지 성능개선 계획수립]**

ㅇ 건축물의 노후도,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 **현황조사 내용분석**

ㅇ 건축물에 적용가능한 **그린리모델링 공사요소**(벽체단열, 냉·난방기, 조명, 환기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발굴 및 적용 공사의 **우선순위 도출**

ㅇ 그린리모델링 **공사 요소별 구체적인 개선방법*** 제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및 그린리모델링 관련 행정규칙 등 관련 기준 만족 필요

ㅇ 그린리모델링 공사 **적용요소** 및 **개선방법**을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추진 가능 방안 마련**(이하 "GR 추진방안")

ㅇ **Energy-Studio(GR전용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를 활용하여 GR 추진방안의 **그린리모델링 전·후**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분석**

* 향후 과업 추진과정에서 운영기관이 제시하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수행기관에 소속된 **에너지평가사 검토 및 확인 必**

② **[기후위기 적응 계획수립]**

○ **지역별·건축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기술요소 발굴**(구조보강, 차수벽 등) 및 공사 우선순위 도출

③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 작성]**

○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지원 유형***(종합형, 맞춤형, 군집형) **제시**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유형 》

❶ (**종합형**)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❷ (**맞춤형**) 건물이력,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중 **일부 적용**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❸ (**군집형**) **하나의 대지 또는 인접한 대지 안**에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을 **군집 단위로 묶어서** 종합형과 맞춤형 **그린리모델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

○ 에너지 성능개선, 기후위기 적응계획을 바탕으로 **최적의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 마련

* 임의 증축 등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해소방안, 석면 조사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구조컨설팅 후 구조보강**에 대한 개략 소요비용과 소요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타 정부 지원사업** 및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과 **중복성** 검토수행(공사내역 등)

-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 검토 시 컨설팅업무의 **우선순위*** 따라 **업무수행**

《 * 컨설팅업무 우선 검토순위 》

❶ 에너지성능개선 절감율 최대(필수 & 병행기술 우선 반영)가 될 수 있도록 검토

❷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환기장치 적용 검토

❸ 예산범위 허용시 ❶, ❷ 항목과 연관된 시설개선공사(내부 및 외관)의 적용 검토

❹ 예산범위 허용시 에너지성능개선과 별개의 시설개선공사 적용 검토

○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에 대한 **지원공사 항목별 사업비 및 총사업비 산출**

- **임의증축 해소·구조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은 건축물별 지원한도 및 기준 등을 고려하여 초과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지자체 협의 사전 협의 필요**

《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유형별 사업비 지원 한도 ※ 변동가능 **》**

<table>
<tr><th>사업유형</th><th colspan="2">대상구분</th><th>지원한도(섬지역)</th><th>비 고</th></tr>
<tr><td rowspan="3">종합형</td><td rowspan="2">일반사업</td><td>일반건축물(연면적 300㎡이상)</td><td>400만원 / 3.3㎡(480만원 / 3.3㎡)</td><td rowspan="4">최대 70억
(서울,중앙·공공 50억)</td></tr>
<tr><td>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td><td>420만원 / 3.3㎡ (504만원 / 3.3㎡)</td></tr>
<tr><td colspan="2">시그니처 사업</td><td>800만원 / 3.3㎡ (960만원 / 3.3㎡)</td></tr>
<tr><td rowspan="2">맞춤형</td><td rowspan="2">일반사업</td><td>일반건축물(연면적 300㎡이상)</td><td rowspan="2">* 지원항목별 단가 등 차이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비 결정 예정
** 종합형(일반사업)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td></tr>
<tr><td>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td><td></td></tr>
<tr><td rowspan="2">군집형</td><td rowspan="2">일반사업</td><td>2~3개동 지원</td><td rowspan="2">350만원 / 3.3㎡(420만원 / 3.3㎡)</td><td>최대 150억
(서울,중앙·공공 107억)</td></tr>
<tr><td>4~5개동 지원</td><td>최대 250억
(서울,중앙·공공 178억)</td></tr>
</table>

○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의 경제성 분석, 기대효과 등 도출

○ 지원사업 대상선정 이후 추진 절차의 프로세스(기간), 일정표(사업종료시까지) 항목별로 **사업 프로세스 작성**

❹ [사업대상 선정지원]

① [정량 평가표 작성]

○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유형별 **정량 평가표**를 **건축물별 작성**

○ **사업대상 선정 배점표**에서 **고득점 및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전체 리스트 정리**

《 * 동점자 우선순위('26년 사업 참고) 》

❶ 공사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량이 많은 경우 우선
❷ 공사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이 높은 경우 우선
❸ 신규 지원대상용도*에 따라 우선 * 도서관, 어린이집, 박물관 등
❹ 사업대상기관에서 소유하는 건축물 우선
❺ 에너지 절감요소 합산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❻ 사업관리 감점이 없는 경우 우선
❼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7년 선정대상 배점표 및 우선순위는 본 사업 공고 시 변동 가능

○ 그 밖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지침**」,「**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문**」및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수행

② **[정량 평가표 검증]**

○ 작성된 **모든 배점표**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❶ 해당 권역 작성자 및 검수자(사업책임자) 실명제 실시, ❷ **권역별 순환형식**으로 **전수검증**, ❸ **운영기관 전수 검증 실시**

③ **[심의위원회 지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선정 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위원들의 질의문답 대응**

2 [시행지원]

❶ [설계단계 지원]

①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지원

《 * 건축기획 업무 》

❶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❷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❸ 디자인관리방안
❹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❺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❻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❼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❽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❾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❿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검토대응**(검토 결과 보완 등)

③ [설계관련 심의지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지원(자료 작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수행)

《 ※ 설계비 추정가격 기준에 따른 업무지원 범위 》

❶ (**모든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❷ (**5천~1억원 미만**) 건축기획 + 공공건축심의
❸ (**1억원 이상**)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④ **[설계공모 지원]**

ㅇ 건축물별 **대상선정 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보고서(안)**(이하 " GR 사전컨설팅")을 고려하여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설계공모 종합 지원**

⑤ **[설계지원]**

ㅇ **그린리모델링 전^{全} 설계과정**(계획, 중간, 실시설계)에서 **GR 사전컨설팅의 공사내역** 등 **반영 여부 검토** 및 **자문**(필요시 공사 내역 변동에 따른 컨설팅 재실시)

ㅇ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GR 사전컨설팅**의 **에너지 성능 개선 절감률 확인 및 검토**

ㅇ 그 밖에 설계 단계에서 **사업선정기관**(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 등으로 이하 "사업선정기관")과 설계사가 협업할 수 있도록 **기술·행정 지원 일체 지원**(인허가 지원 등 포함)

⑥ **[건축위원회 심의 및 기술심의 등 지원]**

ㅇ **건축위원회 심의·기술위원회 심의** 등 **필요서류 작성 및 지원**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상세 사항은「건축법」,「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참고

❷ [시공단계 지원]

ㅇ GR 사전컨설팅·설계도서를 통한 **사업선정기관**의 **시공발주*** **및 기술컨설팅 지원** 등 **발주지원**

* 석면조사 및 구조검토 필요 여부의 결과에 따라 발주서에 포함

ㅇ **그린리모델링 전^{全}시공과정**에서 **사업선정기관**과 **그린리모델링 시공사^{社}간 협의**(현장지원·원격지원·방문지원 등) 지원

- 사전 기초조사 보고서·설계도서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내역·공사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행정지원 일체 수행**(인·허가 지원 등 포함)

ㅇ 사업대상의 그린리모델링 **시공 준공**을 위해 **사업선정기관·국토안전원이 요구**하는 **시공관련 기술·행정 지원사항 일체 수행**

❸ [사업계획변경 지원]

① [사업계획변경 대상여부 검토]

ㅇ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GR 사전컨설팅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또는 사업선정기관 요청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지침기준**」에 따른 **사업변경 대상 여부 검토**

ㅇ 사업변경 대상 시 경미한 변경 또는 **그린리모델링 심의대상 여부 판단**

② 사업계획변경 검토의견서 작성('사업변경검토의견서' 양식은 별도 공지)

ㅇ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성능분석 재실시**

ㅇ GR 사전컨설팅의 그린리모델링 **지원항목 변경 시** 변경 사유 등 **적정성 여부 검토**

ㅇ 추가지원공사비 30% 초과 사유 등 **변경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ㅇ 총괄·운영기관(국토부·국토안전원,이하 "총괄·운영기관") 요청 시 **심의위원회 참석**

❹ [시그니처 사업 지원]

ㅇ **사업 전술 과정**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과 **친환경 특화설계, 선도적 기술 요소 적용·실내환경 개선 밀착지원**

- (**설계·시공 단계**) **선도기술 적용** 등에 대한 **설계 반영** 및 **시공 상태**, 기밀시공 등의 **주요 공종**(단열, 창호 및 설비 등) **모니터링 및 사업변경 지원**

- (**준공 이후 단계**) **공사 전·후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공사 전·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사용량 증감 요인** 등을 **분석**하여, 그린리모델링 적용 요소별 효과 산정

- (**기록관리**) 시그니처 **사업수행 과정 및 공사 사진·영상 기록**을 통해 **시공 과정 中 하자**를 **최소화**하고 사업종료 시 **건물별 보고서 제출**

- (**기타**) 준공 후 현장 방문 설명 등 기타 **운영기관 요청사항 지원**

3 [준공지원]

❶ [준공 전前 하자조사 및 품질검수]

○ **준공 전前 품질 검수**는 **사업선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

○ **해당 권역의 그린리모델링 수행기관 사업책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경력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자(특급기술자급)를 **검수원으로 지정하여 검수 진행**

○ **검수방법**은 상황에 따라 **외관검수***, **기술검수****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물품의 범위와 성질에 따라 **전수검수, 발췌검수**를 **진행**

* 외관검수 : 취득물품에 대한 외관상의 파손이나 기타 하자 유무를 확인

** 기술검수 : 물품의 성능, 기능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 또는 기관에 시험, 분석, 측정 등의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하여 검수기준문서의 물품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

○ 검수원은 협의를 통해 **사업선정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따라 **검사*와 검수를 동시에 실시가능**

* 물품의 품명, 규격, 품질, 성능, 시험성적서, 수량 등에 대한 검사

○ 검수원이 **검수**를 할 때는 **검수대장**과 **검수증빙서**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날인**

○ 검수원이 검수결과 **하자를 발견**했을 때, 지체없이 **사업선정기관에게 통보**

○ 아래 각 사항에 대해서는 **검수 거부 가능**

《 검수거부사항 》

❶ 검수대상 물품은 검수를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음
❷ 물품의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검수를 의뢰한 경우
❸ 제출한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❹ 검수 제반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물품이 상이한 경우
❺ 검수대상 물품에 훼손, 변질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❻ 검수가 거부된 물품은 사전 사용 사유서를 첨부하여, 물품소요부서의 상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❼ '❷,❸'에 의해 검수 거부된 물품은 서류를 완비하고, '❹,❺'에 의한 사유로 검수 거부된 물품은 검수서류에 기재된 정상적인 물품을 납품받아 재검수 요청

❷ [공사 후後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분석]

○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성과 분석**

- 그린리모델링 준공 이후 건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

- **최종 설계·준공 도서**를 바탕으로 **성능분석 수행**

-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온실가스성능 평가 결과 제시**(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등)

- 기타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분석 관련 기술·행정 지원 일체**

❸ [공사 후後 안전점검]

○ 안전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의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육안점검

○ 건축물 노후도에 따른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

○ 구조물의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로 이전의 **점검·진단 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

○ 평가 결과는 이전의 점검·진단 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며, 주요 결함부위 등의 부위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하여 **조사 결과를 도면으로 기록**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과 준공이후 안전점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결과 **안전성 검증 및 보수·보강법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근거하여 국토안전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 안전점검 사업 수준에 준하여 작성(별지 3 참조)

※ 과업내용 및 보고서 양식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의 정기점검표, 사진, 결과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양식은 변경 가능

4 [사업지원]

❶ ['28년 시그니처 사업 대상지 발굴]

① [시그니처 사업 대상지 발굴]

○ 그린리모델링의 **지역확산 거점**으로서 홍보 및 활용가치가 높은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발굴**

- **'28년 시그니처사업 건축물을 발굴**하여 광역시·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28년 대상선정 지원*

*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컨설팅(안) 마련 및 배점표 작성 등

《 시그니처 사업 대상지 발굴 고려사항 》

○ 연면적·사용인원·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고, 홍보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 적용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하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이 예상되는 건축물

② [시그니처 사업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현장조사]

○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친환경 및 녹색 건축물 등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선도기술 및 기술사업화** 등의 **동향 조사·연구**

* 국외 출장 수행 시 최대 2인, 총 12,000 천원 한도에서 사업비 구성 가능

-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관련 협회, 회사, 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그린리모델링 설계·시공단계에서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선도기술 협의 및 관계자·연구자의 네트워킹**

- 그린리모델링 관련 유명 건축물 방문하여 적용된 기술을 분석하고 **시그니처사업 건물에 적용 가능성 모색**

- 국내·외 **방문자료**는 국내 그린리모델링 관련 **워크샵·교육·회의** 등에서 **발표 및 활용**

❷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 단위사업 지원]

※ 단위사업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각의 단위사업에서 지출 예정이므로, 별도의 사업비 계획 불필요(예시: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 등)

① [Energy-Studio(GR전용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

ㅇ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성능 및 온실가스 감축량 예측을 위해 개발 중인 **'Energy-Studio(GR전용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편의성** 및 **활용성 향상 지원**

- **'Energy-Studio(GR전용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프로그램 주요 **업데이트** 시 **파일럿테스트** 지원, **미지원 기능 추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

ㅇ 파일럿테스트는 **2단계***에 걸쳐 추진하며 **타 건물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 결과**와 **비교·분석** 및 **'Energy-Studio(GR전용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제시**

* (1단계) 기관별 동일한 건물 대상
(2단계) 기관별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n개 건물 대상('27년 사업지 대상)

- **'Energy-Studio(GR전용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의 **미지원 기능**에 대한 **개선**과 구체적인 **모델링 기준 방안 수립**을 위한 관련 **참고자료** 및 **정보제공**

※ 자세한 수행 내용·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추진과정에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② [GR-챌린지]

ㅇ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는 'GR-챌린지'를 위한 설계대상지 발굴 및 자료 제공, 전문가 강연·멘토링 등 **기술지원**을 통해 **참가자**의 **사업이해도 증진** 및 **전문역량 강화**

- 종합사업지원 전문기관의 GR사업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GR-챌린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전문가 기술지원**

- 권역별 사업대상지 中 GR-챌린지 설계과제로 활용 가능한 **후보지 2개소 이상 발굴·검토** 및 **최종 설계대상지 선정지원***

* 건축물 현황, 에너지 성능, GR기술요소 적용 가능성, 설계도서·에너지 분석자료

확보 및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적정성 검토, 후보지별 비교·검토자료 작성·제출

- 최종 선정된 설계대상지의 **건축물 기초자료** 및 **설계도서 확보·검토·정리**, 참가자 활용을 위한 **자료 편집·제공***

 *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및 현황과의 일치 여부 확인, 참가자 활용에 필요한 PDF·DWG 등 설계도면의 분류·정리·편집 및 에너지 성능분석 관련 자료 정리·보완

- 챌린지 참가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강연·교육, 멘토링** 및 **운영 자문·심사위원 참여** 등 **기술자문 지원***

 * GR사업소개·우수사례·주요 기술요소 등에 관한 강연·교육, 참가부문별 과제 수행에 관한 멘토링, 챌린지 과제구성·운영방향 자문 및 심사 등 전문가 참여 지원

 ※ 설계대상지 발굴·선정 및 설계자료 제공은 설계 관련 부문 운영 시 수행하며, 챌린지 참가부문 및 운영방식에 따라 세부 지원사항은 조정될 수 있음.

 ※ 설계자료 제공은 기존 종합사업지원 수행과정에서 확보·작성한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챌린지 활용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 및 설계도서 정리·편집·보완 등을 포함함

③ **[GR-특성화대학, GR-기자단(인턴십 포함)]**

ㅇ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는 **'GR-특성화대학교'** 및 **'GR-기자단'**의 **학생**들에게 **현장견학, 현장실습, 인턴십** 등 **실무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이해도 증진 및 전문지식 향상**

- 종합사업지원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수행업무**와 **연계**하여 **현장견학·실습 및 인턴십** 등 **참여기회 제공**

 ※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인턴십 희망기관 조사 및 특성화대학교 학생 매칭 예정

 ※ 현장견학·실습 및 인턴십은 기존 과업수행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참여인원·일정 등 세부사항은 현장여건 및 운영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

- 권역별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사전·사중·준공) 시 **동행**하여 건축물 현황조사, 에너지 성능측정(열관류율, 기밀성능 등) 등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참관** 및 **실습 참여 지원**

 * 권역별 사업지 현장조사 일정은 학생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 및 인원을 포함하여 최소 1개월 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시 공유

- **'GR-특성화대학교'** 및 **'GR-기자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팸투어 시 **권역별 견학대상지 추천, 담당자**(기관) **동행** 및 **주요**

기술요소·사업내용 설명

④ **[GR-취업박람회]**

○ 관련분야에 관심있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용·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여 **유관 분야 진출 지원**

○ **기업상담 부스 운영**(프로젝트, 직무소개 등), 현직자 1:1 **직무 멘토링**, **취업 컨설팅**(이력서, 면접 등), **채용강연** 등 **제공**

⑤ **[GR-지역활성화 교육 및 현장견학]**

○ 그린리모델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운영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역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 사업지원

- 그린리모델링 **관계자**(기술자, 일반국민(어린이·청소년·성인 등)) 대상 **교육·강연 지원, 현장견학 지원**

❸ [기술이전]

○ 사업주체·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종합사업지원 전반에 걸쳐 **보유한 지식·기술**과 관련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

* 권역별/종합사업지원 과업 수행기관간 과업 결과물의 품질차이 ZERO 化

○ **지자체 담당자 및 관계자**(건축사·시공사)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기술교육**(현장교육, 대면·비대면 교육, 강의 등) 및 **워크샵 지원**

❹ [행사지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련 **행사지원**

- **사업관계자**(총괄·운영기관, 지자체, 중앙·공공기관 등) 대상 행사* 內 **교육·강연·발표·현장견학·프로그램** 등을 **운영**

* 사업설명회, 준공식 행사, 워크숍, 기타(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사업과정에서 추진하는 행사)

❺ [정책 · 사업 · 제도 고도화 지원]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제도 고도화 지원**

- 총괄·운영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정책·사업·제도 고도화*를 지원(자문, 회의, 자료작성 등)

* 예시) 사업대상 선정 시, 활용되는 배점표 고도화, 법령 개선(안) 제시 등

Ⅳ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 보고

ㅇ 수행기관은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운영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ㅇ (**착수보고**)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예산내역서, 보안각서 등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예산내역서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사후관리 계획,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ㅇ (**진도보고**)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에 원활한 사업진행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매월 25일 기준(착수 후 1개월 이후) 또는 매 분기 25일 기준으로 과업진도 보고서*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권역별 주관기관은 월간보고회의 또는 분기별 보고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월간보고 또는 분기별 보고 시 과업대상 권역의 추진현황과 추정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최종보고**) 수행기관은 필요시 권역별 관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선정·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월간 또는 분기별 보고	• 월간업무 계획 대 실적 또는 분기별 업무 계획 대 실적 • 문제점 및 진도내용에 관한 보고 • 차월 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매월 25일 (또는 다음달 5일)
중간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과업수행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운영기관과 협의된 일자
최종보고	• 과업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단계별 산출물 첨부	과업준공 10일 전까지
수시보고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과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원 요구 시	수 시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있을 때는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이 경우 세부 일자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함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수행기관은 항상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 성과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수행

기관은 운영기관의 협의로 비용부담을 결정하고, 수행기관은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 크기·배치 등은 운영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성과품 제출

- 수행기관은 과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도록 함
-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사항에 대하여 운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은 운영기관을 경유·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를 득하여야 함
- 과업단계별 보고서는 운영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득해야 하며, 자문비를 지급함
-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등을 성과품과 함께 제출해야 함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형식

구분	성과품명		형 태	크 기	수량	보고일	비 고
대상 선정 전(前)	지자체 보고서	지자체 보고서 (안전점검 포함)	보고서	A4	파일 제출	지자체 보고시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등록
	도면	관련 도면 (현장실측 도면) 및 자료	도면	A3			
		기타 보고를 위한 도면 작성 등	도면·보고서	A3·A4			
	USB	성과품 수록 USB	USB	-	1개	대상선정 이후	-
대상 선정	자료	설계용역과업내용서 또는 건축기획 심의	보고서	A4	파일 제출	사전조사 종료시	대상 사업 별

구분	성과품명		형 태	크 기	수량	보고일	비 고
후(後)		자료 또는 사전계획 사전검토자료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 원본파일 포함)					
	기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 (기획·계획·설계·시공·준공 단계에서의 관련 보고서 등) ※ 별도협의 가능	보고서	A4			
	대상선정 결과 배점표	대상선정 건축물 결과의 배점표 ※높은 점수가 위, 낮은 점수가 아래로 엑셀표 구성	보고서, 엑셀표	A4			
	중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	보고서	A4			
	USB	성과품 수록 USB	USB	-	2개	사전조사 종료시	
사업 종료 후	최종 성과보고서	'2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보고서 (요약보고서, 안전점검, 권역별 통합)	USB, 보고서	A4	1개, 파일	사업 종료시	권역별

※ 최종 성과품은 운영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함

Ⅴ 보안대책

□ 정보누출금지

○ 수행기관은 정보누출금지 등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누출 시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모든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보안사항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총괄·운영기관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 업무수행 시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작업구역출입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에는 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인수한 자료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운영기관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운영기관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운영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 책임자(정·부)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 관련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운영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회의자료 등의 발행제한·회수·파기 등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필요시 수행기관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그 지

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 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수행기관은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성과품 납품 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Ⅵ 기타사항

□ 일반적 손해

○ 수행기관은 본 과업수행 중 운영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수행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손해 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의 협의에 의한다.

ㅇ 수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20, 별표21에 따라 조사대상 건축물에서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조사원의 안전에 유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조사 시 발생한 안전재해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붙임1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자격 및 대상

□ 개요

○ (목적)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자체 및 중앙·공공기관의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사업 공모 전 희망건축물 접수**

○ (신청기간) '26. 11. 6.(금) ~ '26. 12. 11.(금)

○ (신청기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27년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 중인 기관(이하"사업대상기관")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희망건축물 신청 시 사업대상기관 관리 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첨부1]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7년 1월 1일 이전)

○ (사업유형) **❶종합형, ❷맞춤형, ❸군집형** 사업

※ 희망건축물 신청 시 사업유형별 동시 지원 가능하나, 본 사업 신청 시에는 지원 조건에 따라 유형별 별도 선정 예정

- (**종합형**)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사업

- (**맞춤형**) 건물이력,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중 일부 적용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사업

- (**군집형**)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을 군집단위로 묶어서 종합형과 맞춤형 그린리모델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

* 종합형, 맞춤형, 군집형은 사업비 지원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조건은 본 사업 공모 시 상세 확인 요망

□ 신청 방법

① (시스템 접속) 사업대상기관에서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을 **선택** 후 **로그인**

* 기존 회원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필요

② (희망건축물 등록) 사업대상기관에서는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희망건축물 대상**을 **건물별로 등록**

- (**사업개요 입력**) 지역, 사업유형, 광역·기초·건물 담당자정보 입력
- (**건물정보 입력**) 건축물명, 지원용도, 주소, 건축물대장 정보, 추경예정일, 도서 구비현황, 소유구분 등 **각 항목 전체 입력**

구분	주용도군	세부용도		구분	주용도군	세부용도	
1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18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박물관		19			정신보건시설
3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20			노숙인복지시설
4		유치원		21			사회복지관
5		직업훈련소		22			자활센터
6		평생교육시설		23			성매매피해지원시설
7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24			성폭력피해보호시설
8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	25			가정폭력보호시설
9			아동복지시설	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27			다문화가족복지시설
11			노인의료복지시설	28			건강가정지원센터
12			노인여가복지시설	29			청소년복지시설
13			재가노인복지시설	30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14			노인보호전문기관	31		근로복지시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2	관광휴게시설	어린이회관	
16			학대노인피해노인전용쉼터	33	기타공공시설	보건소	
17			복합노인복지시설	34		주민공동시설	

※ (중요) 해당 용도의 세부기준은 [첨부1]의 법적 근거에서 확인할 것

※ 일부 용도에 한하여 연면적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③ (증빙서류 제출) **사업대상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도 첨부 필요(붙임2 양식 업로드)

□ 안내 및 협조 사항

○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하나, 중복건축물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 ❶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 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❷ 복합건축물로서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21~'26년 사전조사 및 컨설팅 완료된 희망 건축물 중 미선정된 건축물도 '27년 희망건축물 신청해야 지원 가능

○ 희망건축물 신청 물량이 많은 경우, 현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현장조사 및 컨설팅 실시 할 경우, 사업대상기관은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관련자료(이주계획 및 지방비 확보계획, 도면 등)를 종합사업관리 업체에 적기 제공하여야 함

※ 금번 희망건축물 신청은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사전조사'를 위한 것이며, 사업지원 내용 등은 본 사업 공모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27. 1월~4월 : 희망건축물 대상 사전조사(현장조사 및 컨설팅) 시행

○ '27. 4월 : 본 사업대상 공모(별도 공지)

○ '27. 5월 : 사업대상 선정

○ '27. 6월 : 사업비(국비) 1차 교부*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2차 교부

○ '27. 8월 : 사업추진(설계 및 시공)

첨부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용도

① 문화 및 집회시설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및 제5호제라목에 따른 **전시장**(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박물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②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

-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③ 수련시설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및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④ 노유자시설

④-1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④-2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보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 (**학대노인피해노인전용쉼터**)「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

④-3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 (**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④-4 근로복지시설

-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관광휴게시설

- (**어린이회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7호제다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⑥ 기타공공시설

- (**보건소**)「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 (**주민공동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제사목에 따른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획 확정 이후 변동가능

붙임2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항목

○ ❶에너지성능개선, ❷기후위기적응, ❸추가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 총 사업비 대비 에너지성능개선 항목의 **비율은 최소 40% 이상**, 기후위기적응 항목의 **비율은 최대 30%이하**, 추가지원 항목의 **비율은 최대 30%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단, 해당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성능개선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 외기에 직·간접하는 창호의 경우, 창호기밀 필수포함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히트펌프 등), 고효율 보일러, 순간온수기,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기후위기적응	홍수·폭우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 보강(역류방지밸브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침수시설, 저류시설 등), 누수침수 센서 등
	태풍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등
	폭염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일사조절장치, 옥외 차양구조물 등
	대설·혹한	열선포장(지붕, 진입로 등), 스노우가드 등
	기타(가뭄, 지반침하 등)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집수·여과·저장),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 확보 검토 등)
추가지원	부대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 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및 기후적응 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27년 본사업 공고시 변경가능**

붙임3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기준[참고]

1 공통 사항

○ (**선정기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검토 후 선정

○ (**유사·중복검증**)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에 따라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수행

○ (**공사예정여부**) 사용자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외 사업(내진보강, 기능보강, 유지보수 등) 예정의 경우

* 종합적 시공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사례 P.69 [참고7] 참조

○ (**지원대상결정**) **사업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국고보조금**을 **매칭**하여 **'26년도 예산한도**에서 **지원대상**을 **결정**

○ (**선정절차**) 사업접수(대상기관) → 사업유형별 우선순위산정·보고(배점기준표, GR센터) → 사업 적정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 고려 선정(국토부, 심의위원회)

2 종합형 사업

□ 일반사업

○ 정량평가 100%로 구성,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에너지절감 요소**와 건축물 **노후도**, **사업성** 및 **적정성** 등을 **배점기준표**(표1 참고)에 따라 **계량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 **배점기준표**는 그린리모델링 요소 적용 계획 및 건축물의 노후도·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80점, 사업여건 20점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가점 14점 및 감점 10점 부여**

- **가점을 받은 경우, 사업 추진시** 해당 항목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기관에서는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신청**요망

ㅇ **동일 점수**의 경우 **아래의 순서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공사전 대비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량이 많은 경우 우선
② 공사전 대비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이 높은 경우 우선
③ 신규 지원대상용도*에 따라 우선

* 교육연구시설(도서관/유치원/평생교육시설/직업훈련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복합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노숙인시설/사회복지관자활센터/성매매피해지원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근로복지시설(근로자종합복지회관), 기타공공시설(보건소/주민공동시설),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박물관), 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④ 기후위기 적응 기술 반영 개수가 높은 경우 우선
⑤ 사업대상기관에서 소유하는 건축물 우선
⑥ 그린리모델링 요소 합산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⑦ 사업관리 감점이 없는 경우 우선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1. 종합형(일반사업) 정량평가 기준》

구 분		총점	배점기준(적용비율)					
그린 리모델링 요소	단열[1]	20점	벽 (10점)	10	8	6	4	2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지붕 (7점)	7	5	3	1	
				75%이상~ 100%이하	50%이상~ 75%미만	25%이상~ 50%미만	항목적용~ 25%미만	
			바닥 (3점)	3	2	1		
				60%이상~ 100%이하	30%이상~ 6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창호	16점	창[2-1] (10점)	10	8	6	4	2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20%미만
			문[2-1] (3점)	3	2	1		
				60%이상~ 100%이하	30%이상~ 6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일사 조절장치[2-2] (3점)	3	2	1		
				60%이상~ 100%이하	30%이상~ 6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설비[3]	15점	냉방 (5점)	5	4	3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난방 (5점)	5	4	3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급탕	5	4	3	2	1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총점</th><th colspan="6">배점기준(적용비율)</th></tr>
<tr><td rowspan="1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5점)</td><td>80%이상~
100%이하</td><td>60%이상~
80%미만</td><td>40%이상~
60%미만</td><td>30%이상~
40%미만</td><td>항목적용~
30%미만</td></tr>
<tr><td>5</td><td>4</td><td>3</td><td>2</td><td>1</td></tr>
<tr><td rowspan="2">신재생[4]</td><td rowspan="2">5점</td><td rowspan="2">태양광 등</td><td>20%이상</td><td>15%이상~
2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5%이상~
10%미만</td><td>항목적용~
5%미만</td></tr>
<tr><td>5</td><td>4</td><td>3</td><td>2</td><td>1</td></tr>
<tr><td rowspan="2">환기[5]</td><td rowspan="2">5점</td><td rowspan="2">폐열회수
환기장치 또는
공조기</td><td>80%이상~
100%이하</td><td>60%이상~
80%미만</td><td>40%이상~
60%미만</td><td>20%이상~
40%미만</td><td>항목적용~
20%미만</td></tr>
<tr><td rowspan="2">전기[6]</td><td rowspan="2">2점</td><td rowspan="2">고효율 조명
LED</td><td>2</td><td>0</td><td></td><td></td><td></td></tr>
<tr><td>적용</td><td>미적용</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BEMS
등[7]</td><td rowspan="2">2점</td><td rowspan="2">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적용</td><td>2</td><td>0</td><td></td><td></td><td></td></tr>
<tr><td>적용</td><td>미적용</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에너지
절감률[8]</td><td rowspan="2">10점</td><td rowspan="2">요소 적용시
에너지절감률</td><td>10</td><td>8</td><td>6</td><td>4</td><td>2</td></tr>
<tr><td>35% 이상</td><td>30%이상~
35%미만</td><td>25%이상~
30%미만</td><td>20%이상~
25%미만</td><td>20%
미만</td></tr>
<tr><td>인정[9]</td><td>5점</td><td colspan="6">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예정 시</td></tr>
<tr><td>소계</td><td>80점</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12">사업여건
(노후도
및 사업
적정성)</td><td rowspan="2">소유[10]</td><td>5점</td><td colspan="6">건축물 직접 소유시(건축물대장 증빙)</td></tr>
<tr><td>3점</td><td colspan="6">건축물 임차시(계약서 증빙)</td></tr>
<tr><td rowspan="5">노후도[11]</td><td>10점</td><td colspan="6">1993년 이전 건축허가</td></tr>
<tr><td>8점</td><td colspan="6">1994~2000년 건축허가</td></tr>
<tr><td>6점</td><td colspan="6">2001~2008년 건축허가</td></tr>
<tr><td>4점</td><td colspan="6">2009~2010년 건축허가</td></tr>
<tr><td>2점</td><td colspan="6">2011년 이후 건축허가</td></tr>
<tr><td rowspan="2">사업
효율성[12]</td><td rowspan="2">5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d></td></tr>
<tr><td>120이상</td><td>120미만~
90이상</td><td>90미만~
60이상</td><td>60미만~
30이상</td><td>30미만~
0이상</td><td></td></tr>
<tr><td>소계</td><td>20점</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총계</td><td>100점</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가점</td><td>안전성[13]</td><td>5점</td><td colspan="6">5년 내 안점점검 결과***(보통, 미흡) 해당 시</td></tr>
<tr><td rowspan="2">사업
적극성</td><td>2점[14-1]</td><td colspan="6">사업완료 후 관리를 위하여 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 예정 시</td></tr>
<tr><td>2점[14-2]</td><td colspan="6">지방비 매칭 비율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사업대상기관에서 확보한 경우</td></tr>
<tr><td>기후위기
시급성[15]</td><td>5점</td><td colspan="6">특별재난지역 또는 재난사태 선포지역의 경우
* 단, 해당 지역에 맞는 기술요소 2개 적용하는 경우 반영</td></tr>
<tr><td>소계</td><td>14점</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감점</td><td rowspan="3">사업
관리[16]</td><td>-5점</td><td colspan="6">이전('20~'25년) 사업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해당 기초지자체 대상 중 단순취소 사업이 있을 시</td></tr>
<tr><td rowspan="2">-3점</td><td colspan="2">3</td><td colspan="2">2</td><td colspan="2">1</td></tr>
<tr><td colspan="2">임의사업변경 건축물
10개 이상</td><td colspan="2">임의사업변경 건축물
10개 미만~5개 이상</td><td colspan="2">임의사업변경 건축물
5개 미만~1개 이상</td></tr>
<tr><td>-2점</td><td colspan="6">공사완료('20~'25년) 건축물 중 중요재산의 처분을 임의로 시행한 해당 기초지자체</td></tr>
<tr><td>소계</td><td>-10점</td><td colspan="6"></td></tr>
</table>

《배점기준 해설》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거실의 외벽, 최하층 바닥, 최상층 반자 또는 지붕 각각의 면적 대비 실제 단열공사를 적용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단, 최하층 바닥의 경우, 최하층 바닥부분만 아니라, 각층 바닥에 난방공사를 시행할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 기존 전기저항식 바닥난방을 교체하는 경우(신설 제외)도 포함

(예시) **단열배점 산정예시**
① 거실의 외벽면적(A) : 200 ㎡, 최상층 지붕 면적(B) : 100 ㎡, 최하층 바닥 면적(C) : 100 ㎡
② 실제 외벽 단열공사 면적(A′) : 200 ㎡, 최상층 지붕 면적(B′) : 50㎡, 최하층 바닥 면적(C′) : 40㎡
③ 벽체단열 : A′ / A×100= 200/ 200 ×100=100%→ 10**점**
지붕단열 : B′ / B×100= 50/ 100 ×100=50%→ 5**점**
지붕단열 : C′ / C×100= 40/ 100 ×100=40%→ 2**점**
⇒ 단열 총점 : 17점

2-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거실의 창 및 문 각각의 면적 합계 대비 실제 창 및 문 공사를 적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 공사 시 창호 둘레에 기밀 시공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정산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제출 필요

2-2) 남측 또는 서측 방향의 창호면적 대비 외부 차양장치(내부 블라인드 제외)를 설치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예시) **창호 배점 산정예시**
가. 창 배점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 : 9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 : 10 ㎡ →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창 총합계면적(A) : 총 100 ㎡
② 실제 창 공사 면적(B): 직접면하는 창 50 ㎡
③ B / A×100= 50 / 100 ×100 = 50%→ 6점

나. 문 배점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문 전체면적 : 17 ㎡, 외기에 간접 면하는 문 전체면적 : 3 ㎡ →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문 총합계면적(A) : 총 20 ㎡
② 실제 문 공사 면적(B): 직접면하는 창 17 ㎡
③ B / A×100= 17/ 20 ×100 = 85%→ 3점

다. 일사조절장치 배점
① 남측 창호의 전체면적 : 80 ㎡, 서측 창호의 전체면적 : 20㎡ → 남측·서측 창호의 총합계면적(A) : 총 100 ㎡
② 남측 외부 차양장치 면적 : 50 ㎡, 서측 외부 차양장치 면적 : 0 ㎡ → 남측·서측 외부 차양장치 총합계면적(B) : 총 50 ㎡
③ B / A × 100 = 50 / 100 × 100 = 50% → 2점
⇒ 창호 총점 : 11점

3) 기존 설비 장비의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설비 장비 각각의 총용량 대비 교체되는 설비 장비의 용량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다만, 추가되는 장비의 경우, 기존 설비 장비 및 교체되는 설비 장비 용량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냉난방기 겸용 장비에 대하여는 각각 반영하여 산정. 또한, 지역난방의 경우, 열교환기 교체도 포함

(예시) **설비공사 배점 산정예시**
① 에어컨 사용기한 6년: 실외기 용량 10 KW × 2대,
→ 기존 냉난방장치의 용량(A) : 총 20KW
② 교체되는 장비 1대 (B) : 10KW
③ B / A × 100= 10 / 20 ×100 = 50% → 3점

4) 신규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립률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기존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

5)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공조기에 대한 기술요소를 신규로 적용할 경우, 해당 기술요소가 적용되어야 할 거실의 총 바닥면적 대비 실제 기술을 적용하는 실의 바닥 면적 비율로 배점 산정

(예시) **환기 배점 산정예시**
① 교사실 : 10 ㎡, 보육실 : 60 ㎡, 유희실 : 30 ㎡
→ 폐열환기형 환기장치가 적용되어야 할 바닥면적 총합계면적(A) : 총 100 ㎡
② 실제 적용 기술 면적(B) : 보육실 60 ㎡
③ B / A×100= 60/ 100 ×100 = 60%→ 4점

6) 고효율 조명 LED 설치 유무에 따라 배점 산정. 기존 LED를 교체하는 경우 제외하며, 전체 조명밀도는 14 w/㎡미만이 되도록 설계

(예시) **고효율조명(LED) 배점 산정예시**
가. 기존 형광등에서 LED 교체 시 → 2점

7)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개선 항목 중 BEMS(Light BEMS, 원격검침기 포함)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배점 산정

8)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전·후(안)의 에너지요구량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에 대한 비율로 배점을 산정

(예시) **에너지절감률 배점 산정예시**
가. 개선전 1차에너지소요량 : 220kWh/㎡*y, 개선후 1차에너지소요량 : 180kWh/㎡*y
→ 에너지 절감률 : 18%
⇒ 에너지절감률 점수 : 2점

9)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예정을 선택할 경우 배점 산정. 공사 후 1개월 이내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녹색건축물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승인 필요

10) 사업대상시설의 소유여부에 따라 배점 산정하며, 임차의 경우, 계약서 및 소유주의 공사 진행 동의서 필수 제출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지역, 부위별 열관류율 변경 기준

12)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kWh/년) ÷ 총사업비(백만원)
* 단, 추가투입되는 지방비를 산정 시 제외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의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보고서 결과(안전등급 : C,D 또는 보통,미흡)에 따라 가점 추가

14-1)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전기, 가스 등 실제 에너지 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계량기 보급사업 실시할 경우, 참여예정인 건축물

14-2)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에 의한 지방비를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예시) **추가 사업비 확보 예시(서울의 경우)**
가. 그린리모델링 총 사업비 5억 →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나. 사업대상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0.5억 추가 확보 → 국비 2.5억, 지방비 3억 투입
⇒ **가점 2점 획득**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자연재난으로 한정)으로 선포된 지역('24 ~ '25년) 중 해당 기술요소에 적정한 기술요소를 2개 이상 적용하는 경우

16) '25년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취소 또는 임의사업변경이 확인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또는 '20년~'25년 사업 중 공사완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을 임의로 시행한 기초지자체의 경우(단, 광역단체 및 중앙·공공 소속 건축물의 경우, 그 단위별 관리 건축물에 대한 감점 시행)

□ 시그니처 사업

○ 정량평가 40% + 정성평가 60%로 구성,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시그니처사업 미선정 시, **'26년 지원용도**에 한하여 **일반사업 선정 가능**

- **(정량평가)** 일반사업 **배점기준표 점수의 40% 점수**
- **(정성평가)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동일 순위**일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순**으로 **우선 선정**

《 표2. 종합형(시그니처) 정성평가 기준》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타당성 (60점)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적정성	10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10
		그린리모델링 지역확산 거점의 활용성	10
	사업의 우수성	컨설팅안의 독창성 및 창의성	10
		컨설팅안의 지역특성 반영 적정성	10
		친환경·선도기술 적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40점)	사업의 현실성	사업 추진 기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의 기대효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속가능성	10
		사업 홍보효과의 우수성	10
합 계			**10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3 맞춤형 사업

○ 정량평가 30% + 정성평가 70%로 구성,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배점기준표**는 그린리모델링 요소 적용 계획 및 건축물의 노후도·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20점, 사업여건 10점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가점 2점 및 감점 5점 부여**

- (정성평가)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 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건물특화형 맞춤형 사업**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요소**는 **평가하지 않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정**

* 환산 시 정량평가의 사업여건 점수만 반영하고, 가·감점은 별도 합산

(**예시**) 정량평가 : 노후도 5점, 사업효율성 5점, 가점 2점, 감점 -4점 / 정성평가 : 총 60점
합산점수 : (사업여건의 정량평가 점수 + 정성평가 점수)×1.25+ 가점 - 감점
= (사업여건 10점 + 정성평가 60점)×1.25 + 가점 2점 – 감점 4점 = **총 85.5점**

○ **동일 순위**일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순으로 우선 선정

《 표3. 맞춤형 사업 정량평가 기준》

구 분		총점	배점기준(적용비율)				
그린 리모델링 요소	에너지 성능개선	3점	단 열	벽·지붕·바닥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3점	창 호	직·간접 외기 창·문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3점	설 비	냉방·난방·급탕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3점	환 기	폐열회수형환기장치·공조기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3점	신재생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 기술 한 개 이상 적용시			
	기후위기 적응	2점	기후위기 적응기술	기후위기적응 기술요소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에너지 절감률	3점	에너지 절감률	3	2	1	
				35% 이상	30% 이상 ~ 35% 미만	30% 미만	
	소계	**20점**					
사업여건 (노후도 및 사업 적정성)	노후도	5점	1993년 이전 건축허가				
		4점	1994~2000년 건축허가				
		3점	2001~2008년 건축허가				
		2점	2009~2010년 건축허가				
		1점	2011년 이후 건축허가				
	사업 효율성	5점	5	4	3	2	1
			120이상	120미만~ 90이상	90미만~ 60이상	60미만~ 30이상	30미만~ 0이상
	소계	**10점**					
가점	사업 적극성	2점	지방비 매칭 비율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사업대상기관에서 확보한 경우				
	소계	**2점**					
감점	사업 관리[16]	-2점	이전('20~'25년) 사업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해당 기초지자체 대상 중 단순 취소 사업이 있을 시				
		-2점	'25년 GR 심의위원회에서 임의사업변경이 확인된 기초지자체 경우				
		-1점	공사완료('20~'25년) 건축물 중 중요재산의 처분을 임의로 시행한 해당 기초지자체				
	소계	**-5점**					

* 가·감점은 기본 점수 총점 30점 외 추가적으로 부여

** 에너지절감률, 사업여건, 가점 및 감점 기준은 종합형(일반사업) 배점기준과 동일

《표4. 맞춤형 사업 정성평가 기준 》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적정성 (70점)	사업 타당성 (40점)	건물 현황 및 여건 타당성	10
		맞춤형 사업의 신청 조건*의 타당성 * 개보수형, 성능개선형, 건물특화형	15
		맞춤형 사업의 필요성	15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30점)	적용 기술요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건물 특성을 반영한 종류, 범위 등	10
		에너지 성능 개선 계획(목표설정)의 적절성	10
		사업비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10
합 계			7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10	8	6	4	2

4 군집형 사업

○ 정량평가 40% + 정성평가 60%로 구성,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동별 종합형(일반사업) 배점기준표 평균 점수의 40% 점수
- (정성평가)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예시**) A, B 동 2개인 경우 : (정량평가) A동 60점, B동 55점 / (정성평가) 50점
합산점수 : (A동 정량평가 점수 + B동 정량평가 점수) / 2 ×0.4 + 정성평가 점수
= (A동 60점 + B동 55점) / 2×0.4 + 정성평가 50점 = **총 73점**

- **동일 순위**일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순**으로 **선정**

《표5. 군집형 사업 정성평가 기준》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적정성 (60점)	사업 타당성 (20점)	건물 현황 및 여건 타당성	10
		군집형 사업의 필요성 * (참고) 중앙식 설비기기 / 입면 디자인 일체성 등	10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40점)	군집단위 공사 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10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기대효과	10
		재원조달(사업비 확보*) 가능성 * 연도별로 나누어 교부되는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용 확보 등	10
		사업 추진 기간에 대한 적정성	10
합 계			6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별지 제1호》 건축물별 기초조사 양식

건축물별 기초조사 양식

1. 기본사항

유형

□도서관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노인피해전용쉼터	□복합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어린이회관	□보건소
□주민공동시설	□전시장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물명					
주소					
허가년도		사용승인년도			
고유번호 (건축물대장)		한전고객번호/ 계약종별	감정원 매칭 불가시 한전에 에너지 사용량 요청 위해 필요		
계량기 단독사용 유무	□유 □무	열 원	□전기 □도시가스 □LPG □기타		
건축물개요	지상 ()층, 지하 ()층 / 건축면적 ()㎡, 연면적 ()㎡				
	입면적(㎡)	창면적(㎡)	벽체면적(㎡)	지붕면적(㎡)	태양광설치가능면적(㎡)
	전체 벽체면적	창호 설치면적	입면적- 창면적		
도면보유여부	□건축(□상세도) □구조 □전기 □기계		CAD 도면	□유 □무	
구조진단	□실시()년 □미실시	석면 조사 필요 여부	□여 □부		
건축물구조	□콘크리트 □조적 □조립식판넬 □기타()				
임의증축 유무	□유 □무	구조안전성(육안)	□양호 □미흡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	동(), 서(), 남(), 북()				
발코니/외부계단 등 유/무	()				

※ 위의 28가지 유형은 과업설명서 5-7페이지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용도'를 확인하고 □에 체크할 것

2. 건물현황

ㅇ 패시브 요소

구 분	내 용	해당면적	단열성능	개선평가
벽 체	콘크리트 위 페인트마감	㎡	(현재) (법적기준)	□필요, □불필요 (50% 성능미달 개선권장)
창호	16㎜ 복층유리 PL창호	㎡	(현재) (법적기준)	□필요, □불필요 (50% 성능미달 개선권장)
지붕(방수)	콘크리트 위 우레탄 방수	㎡	(현재) (법적기준)	□필요, □불필요 (50% 성능미달 개선권장)
※ 벽체/지붕 단열성능은 단열재 두께를 입력. 현장조사 시 불가한 경우, 준공연도의 지역별 단열기준 입력 ※ 창호 단열성능은 열관류율을 입력하고, 성능은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별첨 따름				
과거 개보수년도	벽 체(단열): 년	창 호: 년	지 붕: 년	방 수: 년

○ 액티브 요소

구 분	내 용			내구연한	물량	
					전 체	개선필요
환기장치	없음	경과년수	년	년	대	대
냉난방기	EHP		년	년	대	대
보일러	콘덴싱보일러		년	년	대	대
조명기기	형광등 ()% LED ()%		년	년	㎡	㎡
신재생(태양광)	없음		년	년	㎡	㎡
기 타	-		년	년		

※ 냉난방기 등 개선에 따른 배선, 용량 증설 등에 대한 검토
※ 내구연한은 “해당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기간으로 내구 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상에 문제는 없으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장비로 볼 수 있음. 사용연한 1.5배를 초과한 경우 교체 권고

3.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조사자 판단 또는 관리자 요청사항)

구분	내 용	판단주체

4. 그린리모델링 사업시 임대시설 필요여부(단기 임대 사무실 등)

단기 임대 사무실 등 필요여부	□ 필요 □ 불필요
이주 필요여부	□ 필요 □ 불필요

5. 사업비 추정 상한액

구분	기술요소	해당 물량	단가(원) (예시)	금 액	비 고
필수공사	벽체(외 · 내단열)	㎡			벽체면적
	지붕(외 · 내단열)	㎡			지붕면적
	바닥	㎡			난방면적
	창	㎡			창 면적
	문	㎡			문 면적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연면적
	고효율 냉난방장치	㎡			연면적
	고효율보일러(콘덴싱)	대			대수
	조명(LED)	㎡			연면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			태양광 설치 가능면적
	Cool Roof(쿨루프)	㎡			지붕면적
	BEMS(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			
계					
선택요소	일사조절장치	㎡			창호 면적
	스마트 에어샤워	대			건물당 1대
	순간온수기	대			화장실 등 필요 개소당
계					
총 계					

6. 개략 사업 추진 일정표(안)

추진 내용 \ 일정(월)	2	3	4	5	6	7	8	9	10

7.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벽 체	지 붕
건물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으로 자유롭게 구성		
바 닥	**창 호**	**환기장치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냉방기기	**난방기기**	**보일러**
조명기기	**기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기타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별지 제2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예시)

OO 어린이집
안전점검 보고서

2022. 10

국토안전관리원

1. 일반사항



<시설물 전경>

1.1 일반 개요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OO 어린이집					
위치		경기도 용인시 OO					
운영주체	명칭	OOO	관할지방자치단체	명칭	OOO		
	전화	OOO		전화	OOO		
시설	대상	영유아	시설형태		이용시설		
	세부종류	어린이집	사용유형		일부사용		
이용정원		OOO	전체동수		1동	점검동수	1동
점검수행자		OOO	점검일자		OOO		
			시설안내자		OOO		

1.2 점검대상 시설개요

가. 건축분야

본관				
건축면적	000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구조
연 면 적	000	주요 마감재 (종류)	지붕	콘크리트경사지붕
준공일자	000		외부	치장벽돌 등
층 수	000		내부	도배, 타일 등

나. 토목 및 옥외기타시설

구 분	내 용	위 치
-	해당없음	-

1.3 관리현황

가. 설계도서 보유 및 관리현황

본 관				
설계 도서	건축도면	○	구조계산서	-
	구조도면	-	공사시방서	-
내진설계 적용대상여부			내진설계 여부	

※ ○ : 전체보관, △ : 부분보관, X : 보관자료 없음, - : 확인불가

※ 내진설계 적용대상 여부는 허가당시(건축물 대장 참조) 건축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름

※ 내진설계여부는 보유한 도면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

나. 주요 용도 현황 및 실명

구 분		내 용	비 고
본관	지상1층	원장실,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점검대상시설

다. 주요 보수/보강 및 구조/용도변경 이력

구 분	내 용	시공년도	관련자료
-	해당없음	-	-

라. 그린리모델링 공사 이력

구 분	내 용	시공년도	관련자료
내부마감재보수	냉·난방기, 환기장치, 조명	OOO	
외부마감재보수	단열(벽), 창호, 문(후문)	OOO	

1.4 기타 내용

가. 중점점검 요청부위 및 특이사항

구 분	내 용
중점점검 요청부위	-
특이사항	

2. 점검 내용

2.1 건축/토목 분야

가. 건축 분야 항목별 점검내용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주요시설	1.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 상태	양호	
	2.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보통	
	3.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음, 단면손실 등) 상태	양호	
	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 · 박락 상태	양호	
	5. 철골부재의 접합부 상태(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	해당없음	
	6. 철골부재의 변형(기울음, 처굴 등) 상태	해당없음	
	7. 철골부재의 부식 또는 부재 미시공, 단면손실 상태	해당없음	
일반시설	8. 옥상, 지붕 방수층의 손상 상태	양호	
	9. 외부 마감재(외단열, 치장벽돌, 미장 등) 및 치마의 손상 상태	보통	
	10. 내부 마감재 손상 상태	보통	
	11.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럭 등)의 손상 상태	양호	
	12. 용도변경 또는 사용상 물품 적치 등으로 인한 과하중 (컨테이너, 물탱크, 태양열 집열판, 공조시설 등) 상태	양호	
	13. 그린리모델링 공사 부위의 시공상 결함 유무	보통 or 미흡	
부대시설	14. 옹벽, 석축, 담장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해당없음	
	15.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해당없음	
	16. 외부 난간 및 파라펫 설치 및 손상 상태	해당없음	
	17. 내부 난간 설치 및 손상 상태	해당없음	
	18. 환기구의 손상 상태(덮개 설치 유무 포함)	해당없음	
	19. 점검로 등 손상 상태	해당없음	

<table>
<tr><td>평가
항목</td><td>1.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 상태</td><td>2.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td></tr>
<tr><td>관련
사진</td><td></td><td></td></tr>
<tr><td>위치</td><td>건물(정면)</td><td>건물(정면)</td></tr>
<tr><td>내용</td><td>특이사항 없음</td><td>균열 폭 약 0.3㎜</td></tr>
<tr><td>평가
항목</td><td>2.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td><td>3.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음, 단면손실 등) 상태</td></tr>
<tr><td>관련
사진</td><td> </td><td></td></tr>
<tr><td>위치</td><td>건물(정면)</td><td>보육실 내부 벽면</td></tr>
<tr><td>내용</td><td>균열 폭 약 0.3㎜</td><td>특이사항 없음</td></tr>
<tr><td>평가
항목</td><td>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td><td>8. 옥상, 지붕 방수층의 손상 상태</td></tr>
<tr><td>관련
사진</td><td></td><td></td></tr>
<tr><td>위치</td><td>건물(정면)</td><td>보육실 천장</td></tr>
<tr><td>내용</td><td>특이사항 없음</td><td>2층 점검 불가 / 누수 흔적 없음</td></tr>
</table>

<table>
<tr><td>평가
항목</td><td>9. 외부 마감재(외단열, 치장벽돌, 미장 등) 및 처마의 손상 상태</td><td>10. 내부 마감재 손상 상태</td></tr>
<tr><td>관련
사진</td><td></td><td></td></tr>
<tr><td>위치</td><td>건물(좌측면)</td><td>보육실 내부 벽면</td></tr>
<tr><td>내용</td><td>줄눈 노후화 및 오염</td><td>누수 흔적</td></tr>
<tr><td>평가
항목</td><td>10. 내부 마감재 손상 상태</td><td>11.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럭 등)의 손상 상태</td></tr>
<tr><td>관련
사진</td><td> </td><td></td></tr>
<tr><td>위치</td><td>보육실 내부 벽면</td><td>보육실 내부 벽면</td></tr>
<tr><td>내용</td><td>누수 흔적</td><td>특이사항 없음</td></tr>
<tr><td>평가
항목</td><td>12. 용도변경 또는 사용상 문제 적치 등으로 인한 과하중
(컨테이너, 물탱크, 태양열 집열판, 공조시설 등) 상태</td><td>13. 그린리모델링 공사 부위의 시공상 결함 유무</td></tr>
<tr><td>관련
사진</td><td></td><td> </td></tr>
<tr><td>위치</td><td>건물(정면) 실외기</td><td>보육실(새싹반) 측 창호 외측부</td></tr>
<tr><td>내용</td><td>특이사항 없음</td><td>실란트 코킹 노후화 및 보수 흔적</td></tr>
</table>

평가 항목	13. 그린리모델링 공사 부위의 시공상 결함 유무	
관련 사진	 	
위치	보유실(즐기반) 측 창호 외측부	
내용	실란트 코킹 노후화 및 보수 흔적	
평가 항목		
관련 사진		
위치		
내용		
평가 항목		
관련 사진		
위치		
내용		

2.2 기타 분야

나. 기타 분야 항목별 점검내용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기타시설	20. 간이시설 상태	미흡	

점검항목	20. 간이시설 상태	
관련사진	 	
위치	외부 놀이터 측	
내용	의자 2개소 착석부 파손	
점검항목		
관련사진		
위치		
내용		

3. 결론

3.1 총평

구 분	내 용
총평	대상 건축물은 OOO 준공 후 약 OOO년이 경과된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상1개층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임. 대상 시설 그린리모델링 공사 부위(기계설비 교체, 조명 등)와 주요 부위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내·외부 마감재에 발생된 누수 흔적 및 그린리모델링 공사부위(창호)는 주의 관찰과 보수가 필요한 **보통**인 상태임. **※ 참고사항 : 치장벽돌로 마감된 외벽의 경우, 육안 식별이 곤란한 벽체 내부의 연결철물 부식 등으로 인해 붕괴한 사례가 있으므로 배부름(부풀음) 등의 이상징후가 있는지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아울러, 치장벽돌의 배부름(부풀음) 현상 및 균열 확대 현상이 발생한 경우, 접근 통제 조치와 안전진단 기관의 점검 및 긴급한 보수 조치가 필요함.**
안전등급	**보통**

3.2 유지관리방안

구 분	내 용
유지관리방안	- **건물 정면부 외벽 균열 (평가항목 2) :** 건물 외벽 2층 바닥부에 균열이 있고, 균열 틈새로 우수의 침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위 보수를 권고함. - **건물 외곽 마감재 노후화 (평가항목 9) :** 해당 벽면의 치장벽돌 줄눈 노후화 및 오염(곰팡이 등)이 확인되고 벽면에 습기가 스며들어 누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당 외벽에 발수제 도포 등의 보수를 권고함. - **보육실(귤기반, 새싹반) 창호 주변 누수 및 보수 흔적 (평가항목 10, 13) :** 보육실(귤기반, 새싹반)안 벽면에 누수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고, 외부 창호에 보수 흔적이 확인됨. 창호 기능은 양호하나 창호 주위 실란트 코킹 노후화 및 실란트 도포 미흡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위 주의 관찰과 보수를 권고함. - **간이시설 상태 (점검항목 20) :** 해당 건물 정면 벤치 2개소에 착석부 주위 파손이 있고 지속적인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를 권고함. **※ 해당 시설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에는 창호 주변 누수가 없었으나 공사 후에 누수 피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 지자체에 연락을 통해 조치 예정.**

별첨 1

안전점검 결과 분류표

등급 구분	시설의 상태	비고
양호	조치가 필요 없는 최상의 상태이거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고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첨 2

별지 내용 수록 (해당시)